

계약분쟁 대비부터 해결까지, 중소기업 분쟁 대응 해결방안 제시

-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 건수의 90% 비중 차지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
- 사례 중심 설명으로 분쟁조정제도 이해를 높이고, 분쟁 관련 사전 컨설팅 제공
-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국회 제출(4.11일 김영진의원 대표발의)

재정경제부는 '26.5.13.(수) 14:00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「2026년 제1차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」를 개최(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)하였다.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주간(매년 5월 셋째 주)을 계기로, 지난해 분쟁조정 청구 건수의 90%(54건/60건)를 차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<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>

- (개요) 조달기업의 청구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(위원장: 재정경제부 국고실장)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제시하는 신속저비용의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
 - * 민간 10, 정부 5 등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(국가계약법 제29조)
- (현황) 지난해 역대 최다인 60건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금년 100건 상회 전망
 - * ('14) 1 → ('20) 25 → ('23) 46 → ('24) 53 → ('25) 60 → ('26) 100↑(예상)
- (성과) '25년 청구인용률(50.0%) 및 조정성립률(35.7%)도 높은 수준으로 조달기업의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

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와 조정사례, 국가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유형 및 합리적인 해결방안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였다. 특히 지난해 총 6차례 설명회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·내실화하였다.

아울러 실제 분쟁을 겪고 있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1:1 맞춤형 사전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여, 계약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. 이날 설명회에는 중소기업·협동조합 계약 담당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.

한편, 조달기업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보다 쉽고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. 우선 금년 6.11일부터는 발주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청구 기간이 각각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. 이에 더해 지난 4.11일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.

이번 개정안에는 조달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폭넓게 담겼다. 우선, ①계약금액 조정·지체상금 등 금전적 분쟁에 대해 위원회가 구속력 있는 판단을 내려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도록 재정(裁定) 제도를 도입한다. 또한 ②분쟁조정 청구 전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거쳐야 했으나, 앞으로 기업이 사전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. 이는 기업들이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절차적 장벽을 낮추는 취지이다.

아울러 ③발주기관 신청·위원회 직권으로 계약조건·부당특약 등을 사전에 심사 및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, 분쟁 발생 이전 단계에서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예방한다. 이와 함께 ④분쟁조정위원 수를 확대해(15→30명) 위원회 개최를 활성화하고, ⑤중소기업 등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분쟁에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의 권리구제 지원도 강화한다.

이번 국가계약법 개정이 조달 현장의 분쟁 해결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 정부는 앞으로도 분쟁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계약제도와 관행을 지속 발굴하여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이주현 재정경제부 조달계약정책관은 “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가 현장에서 믿고 찾는 해결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 또한 중기중앙회 양찬희 전무는 “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중소조달기업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”고 하였다.

정부는 이번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관련 협회 및 업계를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연말까지 격월로 개최할 계획이다. 아울러 보다 많은 조달기업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「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이해와 사례」(25.11월, 시공사) 발간에 이어 추가 사례집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재정경제부 국고실 계약분쟁심사과	책임자	과 장	임재정 (044-215-5640)
		담당자	사무관	류남욱 (jknamu@korea.kr)

